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장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2.3.5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2년 3월 5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이창열

가. 제안이유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자로 「지방세법」을 전문화·체계화하기 위하여 3개의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, 조항의 변경에 따라 근거법령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(1) 안 제2조(지급대상) 제1항제4호에서 2010. 3. 31(법률 제10219호)로 「지방세법」이 「지방세기본법」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인 “ 「지방세법」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” 을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” 으로 근거조항을 변경함

(2) 안 제8조(환수) 제1항제4호에서 2010. 9. 20(대통령령 제22394호)로 「지방세법시행령」이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 조항인 “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39조”를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 제65조”로 근거조항을 변경함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이 3개의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분법되어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, 「지방세기본법」과 「지방세기본법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는 변경된 근거법령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내용이 없고, 우리 구 조례규칙 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